##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3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송옥주·정성호·이병진

한정애・이재관・박 정

부승찬 • 이수진 • 박해철

전용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 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
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	선 제공)
단체와 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u>자녀</u>
<u>7.·8.</u> (생 략)	<u>8.•9.</u>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